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소관)

2023. 11.

대 한 민 국 정 부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구 분			계	조 치	결 과			
		Т	T		711	조치중	조치완료	
	여	성	정	책	10	5	5	
여	가	족	정	책	11	6	5	
성 가	청	소	· 전	책	17	1	16	
/r 족	권	익	증	진	10	2	8	
부	기			타	2	1	1	
		소	계		50	15	3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	
공공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1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	
		소	계		1	1	-	
합계			51	16	35			

〈작성목록 및 조치결과〉

			조치	[] 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1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의 후속 사업이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제대로 운영할 것	0	
	2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수행기관인 '빠띠'와의 계약 해지를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		0
	3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현황에 대해 인지하고,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0	
	4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되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	0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	0	
여성 정책	6	민간 기업에서 여성의 권익신장,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 분야의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0	
	7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0
	8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도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도록 기술전문직 분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할 것		0
	9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해 전 부처 기획재정담당 부서에 성인지 예산 담당자 지정을 검토하고, 직접목적 사업 비중을 강화하며,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성별 영향평가법 개정을 검토하고, 성인지 예산 개선방안을 업무계획에 포함하며, 제도 평가 및 성평등 전담기구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 실시를 검토할 것		0
	10	'낙태죄' 폐지 이후 인공임신중지 관련 교육 마련 및 상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0
	11	아이돌보미의 활동 중단, 퇴직 등을 방지하고, 활동 중단 아이 돌보미의 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것		0
가족 정책	12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	0	
	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아동 양육 한부모가 장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해 근로 및 취업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0

				[]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14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0	
	15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리지 않고도 사전에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학습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것		0
	16	현재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진정한 자립을 위해 단순 현금 지원보다 교육과 취업 연계 확대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것		0
	17	군산 가족센터 직원 부당해고와 개인 메신저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가족센터 평가 시 노동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0	
가족 정책	18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의 실시 현황을 조사하고, 중단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0
	19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키즈존(No-Kids Zone) 등 아이 있는 가족에 대한 기피, 혐오, 차별을 해소하고 아이의 특성을 포용 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0	
	20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는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용어 등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정책과제가 담겨있는바 여성가족부는 정책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점검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이에 나설 책무가 있음을 인지할 것	0	
	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는 민법 제781조제1항을 개정하여 부성우선주의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는바 여성가족부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계획 이행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0	
청소년 정책	22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0
	23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다양화, 온라인 구매방법 간편화 및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방법 안내 등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실제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할 것	0	

				[]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24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적발 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민간단체의 국가 보조금 부정사용 시 환수 조치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0
	25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할 것		0
	26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단의 점검으로 적발건수에 대한 시정률을 개선하고 모니터링단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0
	27	여성가족부는 내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집회장, 야영장 등 기반시설 설치 등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		0
	28	여성가족부는 세계잼버리 행사 기간 동안 폭염, 폭우, 비산먼지 대책, 해충방역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		0
청소년	29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이 저조한 현실이므로 이를 확대할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할 것		0
정책	30	마약성 의약품 불법 구매·유통 등 마약류로부터의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약류·약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0
	31	최근 청소년 마약 복용률 및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마약 이야기를 다루는 웹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등 여성가족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0
	32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배치를 통한 심리지원 방안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0
	33	은둔형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0
	34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이외의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 에게도 자립지원정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0
	35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과 관리가 부족해 보이므로, 향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식약처의 청소년 마약 예방 대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Ο

		, , , , ,		[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청소년 정책	36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충분한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 노력 등 방안을 마련할 것		0
	37	청소년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 지원 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0
	38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완화 계획과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할 것		0
	39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및 관련 기관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0
	40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0
	41	가정폭력·스토킹 복합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0
	4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고, 기간제 인력을 정규직화하며, 전담 인력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0	
권익	43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	0	
증진	44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확대 등 사업을 다양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0
	45	해바라기센터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난 해소를 위해 수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0
	4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립 지원 및 적정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0
	47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구제절차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것		0
	48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열람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0

			조치	시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기타	49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할 것		0
714	50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수 조치를 할 것	0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51	(양육비이행관리원) 가.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재부가 승인한 양육비이행지원 사업 인력(99명)중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미 배치된 인력(36명)의 50%(18명)를 2024년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단계적 재 배치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별도 인력·예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을 2020년 3월 이전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조직을 2021년 6월 직제규정 개정 이전으로 복구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의 의견이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것.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변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인력 충원 노력을 기울일 것 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운용과 관련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등 기관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노력을 기울일 것	0	

공백

2022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여성정책]	
1.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의 후속 사업이므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제대로 운영할 것	 ○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은 지역양성 평등센터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음 ○ '23년 센터 운영 지침에 관련 사업 내용 및 추진 절차를 반영하였음('22.12월) ★ 청년 소통 프로그램 등 추진 : 전남(8.16.), 부산(9.9.), 인천(9.13.)
2.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수행기관인 '빠띠'와의 계약 해지를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	○ '버터나이프크루'사업수행기관인 '빠띠'와 협의하여 계약 해지 완료함('22.12월)
3.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현황에 대해 인지하고,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 시·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현황 등 지방정부 성평등 추진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겠음
4.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되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	 ○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기능강화를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과제로 포함하였음('23.1월)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권고 기능 추가, 후속조치 이행 여부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신설기구 평가 대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성 평등정책담당관 존속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6. 민간 기업에서 여성의 권익신장,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 하여 민간 분야의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HR 담당자 교육 추진, 성별균형 제고와 경력 단절 예방 우수기업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 및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 해나가고 있음 ○ 또한,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상장법인·공공 기관의 성별임금 통계를 발표하는 한편, 여성 경제활동백서 발간을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나가겠음
7.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3년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향* 및 임금테이블 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 노력함 *('21년) 0.9% → ('22년) 1.4% → ('23년) 1.7% **('22년) 1년 미만~10년 이상 → ('23년) 1년 미만~14년 이상
8.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도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도록 기술전문직 분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할 것	○ 여성들이 기술전문직분야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 할 수 있도록 IT, 디지털,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 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음 *고부가가치 : ('22년) 66개 → ('23년) 75개

9.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해 전 부처 기획재정담당 부서에 성인지예산 담당자 지정을 검토하고, 직접목적 사업 비중을 강화하며,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을 검토하고, 성인지 예산 개선방안을 업무계획에 포함하며, 제도 평가 및 성평등 전담기구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실시를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재정담당 부서에는 성인지 예·결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23년의 경우 직접목적 사업의 비중("22년 16.9% → '23년 45.5%, 예산액 기준)이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
- 아울러,「성별영향평가법」을 개정("15.2월)하여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 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 앞으로도 연구용역 실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10. '낙태죄' 폐지 이후 인공임신 중지 관련 교육 마련 및 상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23년에 수립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3~'27)'에 '인공임신중절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과제를 새롭게 추가함
- 이를 통해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이 원활이 진행되고,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심리적 온·오프라인 상담이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노력할 예정임

[가족정책]

- 11. 아이돌보미의 활동 중단, 퇴직 등을 방지하고, 활동 중단 아이 돌보미의 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23.2.16.)을 마련, 추진 중임
-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시 수당을 지급 중('23.1~)이며, 기존 최저임금 수준이던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24년도 5% 인상함
 - * 돌봄 수당(최저임금) : ('23) 9,630원(9,620원) → ('24) 10,110원(9,860원)

시정·처리요	.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12.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강제 징수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 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
-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근거 마련* 및 고의적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를 강화**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 중임
 - *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김선교·전주혜·이용선 의원)
 - ** 명단 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 기간 단축,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김미애·이용선·유정주·정경희·양경숙 의원)
- 1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아동 양육 한부모가 장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해 근로 및 취업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23년부터 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통해 장애아동 양육 한부모가족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지침을 개정함('22.12.30.)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표1에 의함
- 14.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및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추진 중임('23.2월~)
- 15.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리지 않고도 사전에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학습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것
- '23년부터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시, 청소년한부모 지원임을 밝히지 않고 학습지원을 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지침 반영, '23.1월)
- 또한 청소년한부모 지원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함(지침 반영, '23.1월)

- 16. 현재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 성을 제고하고, 진정한 자립을 위해 단순 현금 지원보다 교육과 취업 연계 확대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것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e-Book 제작·배포('23.1월)하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행복e음 시스템의 한부모 개인정보를 활용해 제작된 e-Book을 각 개인에게 MMS로 송부('23.6월) 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제고함
-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국 가족 센터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함
 - * ('22년) 93개소 → ('23년) 98개소 → ('24년) 전국 확대 목표
- 17. 군산 가족센터 직원 부당해고와 개인 메신저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가족센터 평가 시 노동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 '군산 기족센터' 현장 점검 실시('23.3.24)
 - 아울러 향후 가족센터 평가 시('26)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평가지표 반영을 검토하겠음

- 18.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의 실시 현황을 조사하고, 중단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지자체의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23. 8월)하고 추진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단 등의 권고 조치 완료
 - * ('21.9월)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23개 지자체 →
 ('23.8월)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미추진 17개 지자체,
 추진중 6개 지자체(중단 권고)

- 즈존(No-Kids Zone) 등 아이 있는 가족에 대한 기피, 혐오, 차별을 해소하고 아이의 특성을 포용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 19.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키│○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정서를 확대해 나가겠음
- ~2025)에는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하는 정책과제가 담겨있는바 여성가족부는 정책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이에 나설 책무가 있음을 인지할 것
- 20.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 | ㅇ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매년 각 부처 시행계획 및 추진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2025)에는 민법 제781조제1항을 개정하여 부성우선주의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는바 여성가족부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계획 이행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 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 | ㅇ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시	항
(건의사항 포험	l)

[청소년정책]

- 22.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총사업비 ('23~'27)가 213억원으로 확정되어 건립이 정상 진행중임.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 ('23.10.) 설계용역 착수 예정
- 23.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구매처 확대·다양화, 온라인 구매방법 간편화 및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방법 안내 등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실제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매년 확대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대상자가 생리용품을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구매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음
-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이용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 다각화를 통해 대국민 사업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음
- 24.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적발 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시 환수 조치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자체 청소년동아리활동 보조사업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23.2월~3월), 부정사용 적발 환수 조치 완료('23.6월)
- 특히 서울시에서 청소년동아리 대상 보조금 집행 전수 조사 후 동아리 지원금 사용 증빙 누락에 따라 보조금 반납 완료('23.6.30)

- 25.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 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할 것
- 26.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단의 점검으로 적발건수에 대한 시정률을 개선하고 모니터링단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27. 여성가족부는 내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집회장, 야영장 등 기반시설 설치 등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

- 안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기적 (분기별) 개선실적 및 개선계획(재원확보, 개선공사 예정시기) 등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 지자체에 지적사항 개선요구 및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 등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23.1월)하였음
 - * '22년 시설별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요청('23. 매분기)
- 불법·유해정보가 차단될 수 있도록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단의 자율 규제 요청 건수에 대한 시정 조치율*을 개선함
- * 시정 조치율 : ('21년) 52.1% → ('22년) 67.4% → ('23.9.) 68.6%
-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단의 인력관리를 위해 모니터링단 근로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월 1회 실시함
 - * ('23년) 모니터링단 전원 직무 교육(2월) 및 신규직원 채용 시 수시교육 실시
 - ** ('23.9.) 매체센터 직원 대상 총 8회 실시(월1회)
- 대집회장, 야영장, 기반시설 등 시설설치 공사를 행사 전까지 공정별로 완료하였고,
- 잼버리 현장을 중앙부처 및 전북도, 조직위와 함께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음
- * 주요점검 내용: 시설설치 공정관리, 재난안전 대책 등
- 현장점검 및 현안점검회의, 서면보고를 통해 공사 일정, 폭우, 폭염, 해충 대응준비상황을 체크하였고
 - 특히, 행사직전 진행된 현장방문(7.24)에서 화장실, 샤워장 등 상부시설과 글로벌리터센터 등 기반 시설을 직접 점검함

시정·처리요구	² 사항
(건의사항 포	도함)

- 28. 여성가족부는 세계잼버리 행사 기간 동안 폭염, 폭우, 비산먼지 대책, 해충방역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
-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태풍, 폭염, 강풍, 비산먼지, 감염병, 인파관리대책 등 재난 분야별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음
 - * 분야별 위기상황에 맞는 종합행동매뉴얼 구축(~'23.7)
- 행사 초기 폭염, 화장실 위생문제 등이 있었 으나 각 부처 및 지자체, 민간기업이 합심 하여 개선하였음
- 29.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이 저조한 현실 이므로 이를 확대할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참가자 확대를 위하여 한국스카우트 연맹에서 권역별 순회 홍보와 17개 시도교육청 방문 등을 실시하고,
 - 참가자격 기준을 '한국스카우트연맹에 2년 이상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대원'에서 '가입 후 일정교육을 이수한 대원'으로 완화 하여 국내 참가자 모집 확대를 추진하였음
- 30. 마약성 의약품 불법 구매·유통 등 마약류로부터의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약류·약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마약 노출 차단 및 예방강화 등을 위해 대책 수립함*('23.5월)
 - *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은 식약처와 협력하여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초소양교육으로 진행 ('23.8월 기준 212건 2.198명 실시)
 - 청소년 대상 마약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 마약류 판매 홍보 정보를 점검하여 플랫폼 사업자 에게 자율 규제를 요청하고 있음
- * 마약류 홍보 점검 : ('21) 18,969건 → ('22) 76,323건 → ('23.8) 44,971건

시정·처리요구사항	L
(건의사항 포함)	

- 31. 최근 청소년 마약 복용률 및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마약 이야기를 다루는 웹툰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등 여성가족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웹툰은 정보통신물의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정보 노출 방지 협조요청('23. 9.)함
 - * 방심위에서 한국만화가협회와 '12년 협약 체결, 자율규제 실시중
- 기관 간 청소년 마약류 근절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신·변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 강화 방안 대책'을 마련('23.5.)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 마약류대책협의회'(국조실 주관)에 참여하고 있음
- 32.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사 배치를 통한 심리지원 방안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종합심리평가 직접 수행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23.7월~)
- 33. 은둔형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은둔형 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조기에 발굴해 생활비·학업지원비,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자 법령을 개정하였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8조 개정('23.4.18)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활동 등에 대해 현금 및 물품 지원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상담, 아웃리치 등의 과정을 통해 은단형 청소년 조기 발굴및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
 조사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 은둔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추진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 에게도 자립지원정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34.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이외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학업 지원을 포함, 주거 및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 * 해당 사업: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우선 지원, 청소년국제교류, 사회적기업 취업, 청년일 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35. 학교 밖 청소년의 마약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 보다 중요하나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과 관리가 부족해 보이므로, 향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식약처의 청소년 마약 예방 대책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음
- o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지침을 개정* ('23.1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음
- * 기초소양교육 內 마약류 예방교육 적극 실시 권고
- ** 마약류 예방교육 실적 : ('22.) 73명 → ('23.8월) 2.198명
- 이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內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교재* 개발 보급 및 강사인력 지원' 과제를 포함하였음 (*22.11월)
- * 식약처 주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마약류 범죄예방 교재를 개발 중으로, '23.12월 중 개발 완료 예정임
- 36.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자립 지원관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충분한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 노력 등 방안을 마련 할 것
- '23년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 설치(2개소)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대('22년 11개소 → '23년 13개소) 하였음
- 37. 청소년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함
- * ('21~'22) 2년 이상(직전 1년연속) 보호 시 월 30만원 지급 → ('23)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 시 월 40만원 지급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38.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완화 계획과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 할 것
- '22년 하반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수당 지급요건을 '23.1월부터 완화함*
- * (당초)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1년연속) 보호받은 자 → (완화)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권익증진]

- 39.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및 관련 기관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등을 신규 예산에 반영함('23년 14.2억원)
- 40.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상담 프로그램을 강 화할 것
- ○「스토킹방지법」을 제정('23.1.17.공포, '23.7.18. 시행)하는 한편,
 - *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사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연구 추진('23년)
 - * (주요내용) 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등
- '23년 스토킹피해자지원 신규 시범사업 추진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1. 가정폭력·스토킹 복합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정구성원인 가해자의 추가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확인 및 스토킹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 제도 개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2.8.~) 및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등 피해자 지원 * 가해자 대상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용이하도록 증거서류 기준을 완화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복합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여성긴급전화1366과 경찰 112 종합상황실을 연계하여 스토킹 피해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23년) 및 전국 확대 추진('24년)
4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고, 기간제 인력을 정규직화하며, 전담 인력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정규인력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중임 * '22년 4명, '23년 3명, '24년 2명 충원(예정) ○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1:1 개인상담, 간접외상 스트레스 및 소진관리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전담인력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소진방지 프로 그램('23년 60백만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43.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	○ 광역 단위 지역특화상담소('22년 10개소 → '23년 14개소)를 확대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연계 강화

시정·처리요	-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44.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확대 등 사 업을 다양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청소년·학부모·교사 등 대상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 중(23년 15종, 996백만원)
-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 개통('22.5.) 및 교육부·EBS 등 플랫폼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홍보 예산 반영('24년 정부안 4.65억 원)
- 45. 해바라기센터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난 해소를 위해 수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센터 인력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에 해바라기 운영 실적 반영, 응급키트 처치료 인상^{*} 등 병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23년 예산을 증액^{**}하였음
 - * 응급키트 처치료 인상('23년): 개당 7.5만원→10만원
- ** 해바라기센터 예산 증액 : ('22년) 174억원 → ('23년) 186억원 (12억원 ↑, 7%)
- 4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립지원 및 적정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긴급 보호, 전세임대주택* 제공, 의료 및 무료법률 구조 연계, 새일센터 연계 등의 서비스 지원
 - *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군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 시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스토킹 주거 지원 연계

시정・オ	러리요	-구사항
(건의	사항	포함)

47.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절차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 할 것

- ○「스토킹방지법」제정('23.1.17.)으로 교제관계 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함
- 피해자 지원시설(1366센터, 상담소)을 통해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를(최대 30일까지) 지원하고 있음
- * 교제폭력 피해자등 지원 실적('22년, 1366센터)
 - : (상담) 10,142건, (긴급보호) 188명
- 대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시 교제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23년)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발굴' 안건 논의(경찰청, 민간위원 참석, '23.6월)
- 임대주택 등 긴급주거지원 대상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23.6월~)
-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배포
 ('23.11.) 및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24년)
- 48.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열람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모바일 고지 이용의 편의성 향상*과 개인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열람률이 개선되었음 (('21년) 27.5% → ('22년) 31.2%)
 - *(기존) 카카오톡(1차) 네이버(2차) 순차발송 → (개선) 카카오톡·네이버 동시 발송('22.)
 - ** (기존) 인증서(영문&숫자 9자리이상) → (개선) 비밀번호(숫자6자리)('22.)
- 열람률 제고를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이벤트 ('23.4~5월, 8~12월), 모바일 고지 제도 홍보 영상 제작 및 시스템 개선 추진('23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기획조정실]	
49.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두루 누리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할 것	○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 적극 활용 요청('22.12.2.) 및 개정된 '23년 지원대상 [*] 을 추가 안내하였음 ('22.12.29.)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근로자와 그 사업주
50.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수 조치를 할 것	○ 보조금 환수명령,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93백만 원을 환수하였으며(*23.9월 기준), 향후에도 부정수급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음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51. (양육비이행관리원)
- 가.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재부가 승인한 양육비이행지원 사업 인력(99명)중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미 배치된 인력(36명)의 50%(18명)를 2024년까지 양육비 이행관리원으로 단계적 재배치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별도 인력·예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
-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을 2020년 3월 이전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조직을 2021년 6월 직제규정 개정 이전으로 복구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의견이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것.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변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인력 충원 노력을 기울일 것
- 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운용과 관련해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의견을듣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등기관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위해관련 부처와 함께 노력을기울일 것

-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등 개선
- 양육비이행관리원내 본부 신설 및 예산·인사· 조직 운영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의견 반영 등
 - * 정관 및 직제 규정 개정('23.2.)
 - 양육비이행원지원 사업 인력 추가배치(*23.9.)
 - 변호사 인력채용 및 처우개선 등 노력 지속 예정